

행정처분기준(제25조,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(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의하되,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.
- 나.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마.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.
- 바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고, 그 처분이 지정취소(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등록취소(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| 위 반 행 위 | 근거 법조문 | 행정처분기준 | |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| | 1차 | 2차 | 3차 |
| (1)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, 제조소 등의 위치·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| 법 제12조 제1호 |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| 사용정지 60일 | 허가취소 |
| (2)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| 법 제12조 제2호 | 사용정지 15일 | 사용정지 60일 | 허가취소 |
| (3)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| 법 제12조 제2호의2 | 경고 | 허가취소 | - |
| (4)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·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2조 제3호 | 사용정지 30일 | 사용정지 90일 | 허가취소 |
| (5)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2조 제4호 | 사용정지 15일 | 사용정지 60일 | 허가취소 |
| (6)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2조 제5호 | 사용정지 10일 | 사용정지 30일 | 허가취소 |
| (7)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2조 제6호 | 사용정지 10일 | 사용정지 30일 | 허가취소 |
| (8)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| 법 제12조 제7호 | 사용정지 10일 | 사용정지 30일 | 허가취소 |
| (9)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·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2조 제8호 | 사용정지 30일 | 사용정지 60일 | 허가취소 |

나.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| 위반사항 | 근거법규 | 행정처분기준 | | |
|---|------|--------|----|----|
| | | 1차 | 2차 | 3차 |
| (1)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| 제58조 | 지정취소 | | |
| (2)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·승인 등이 취소된 때 | 제58조 | 지정취소 | | |

| | | | | |
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(3)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| 제58조 | 지정취소 | | |
| (4)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| 제58조 | 업무정지 30일 | 업무정지 60일 | 지정취소 |
| (5)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·감독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| 제58조 | 업무정지 30일 | 업무정지 60일 | 지정취소 |
| (6)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| 제58조 |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| 업무정지 90일 | 지정취소 |
| (7)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| 제58조 |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| 업무정지 90일 | 지정취소 |
| (8)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| 제58조 | 경고 | 업무정지 90일 | 지정취소 |

다.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| 위반사항 | 근거법령 | 행정처분기준 | |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| | 1차 | 2차 | 3차 |
| (1)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| 법 제16조 제5항 | 등록취소 | | |
| (2)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| 법 제16조 제5항 | 등록취소 | | |
| (3)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| 법 제16조 제5항 | 등록취소 | | |
| (4)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| 법 제16조 제5항 | 업무정지 30일 | 업무정지 60일 | 등록취소 |
| (5)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 법 제16조 제5항 | 업무정지 30일 | 업무정지 90일 | 등록취소 |